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1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」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나, 「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」에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위임사무 축소가 우려되므로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평창문화원 사업보조금 용도 확대 (조례안 제7조)

-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추가
-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추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「붙임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.

라. 기　　타 :

1) 입법예고(2015.10.27. ~ 11.16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“원안동의”

4) 부패영향평가 : “원안동의”

평창군 조례 제　　호

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

10.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업보조금의 용도)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.	제7조(사업보조금의 용도) -----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.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
<신 설>	10.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
9. (생 략)	11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조례 제6조(보조금의 지원범위)

-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	문화관광과장 최승극
연락처	(033) 330 -2253

관 련 법 령 발 췌

□ 지방문화원진흥법

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